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윤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8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 불량 주거지의
개선을 위하여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서울 도심 환경은 수십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자연경관지구의 건축 제한 규정은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된 결과,
도심 주거지의 정주환경은 매우 열악해진 상태이며,
도심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조경면적 등을 완화하여 정비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당해 온
자연경관지구 내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